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0일, 박선하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5년 1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박선하 의원

나. 제안이유

○ 기존의 장거리 송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3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10조)
-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공감대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12조)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남정해)

####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분산 설치하는 '분산에

너지 시스템'의 도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장거리 송전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더불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는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 내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해 적절해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료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

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분산에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1)에 따른

#### 1)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의 연계가 되도록 하였음.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보급량·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심의사항)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2)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에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④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⑥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정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는 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보조·융자)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함.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안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2조(사회적공감대 확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안 제13조(분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내용, 공공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안내·홍보·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실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현재 대규모 원전 및 석탄발전소에 적합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